#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1076

제안년월일: 2023년 12월 19일

제 안 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 현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련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이 마련 중인바 이를 고려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·시행을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수정하고,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 골자

○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·시행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하고, 기본계획 수립· 시행 주기를 5년으로 함(안 제4조).

#### 3. 참고사항: 생략

##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"를 "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"를 "시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립·시행할 수 있다" 로 한다.

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추진하는 전문 기관"을 "추진하는 관련 기업, 전문 기관"으로 한다.

#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제4조(기본계획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전기 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 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<u>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</u> 1. ~ 7. (생 략)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 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 제6조(사업 지원)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<u>추진하는 전문 기관</u>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1. ~ 5. (생 략)	제4조(기본계획 수립·시행 등) ①

#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전기자동차"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.
  - 2. "배터리"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제공하는 전지를 말한다.
  - 3. "재사용"이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성능 평가·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  - 4. "재제조"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·세척·검사·보수·조정·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.
  - 5. "재활용"이란 에너지가 제거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, 해체, 파쇄 등을 통해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재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제4조(기본계획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 - 1. 기본방향 및 목표
  - 2.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
  - 3. 산업 동향 및 전망
  - 4. 육성 및 지원 시책
  - 5. 전문인력 양성
  - 6.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
  -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- 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·시행 등을 위하여 국내외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동향, 기술,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사업 지원)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업,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재사용·재제조·재활용 관련 연구·개발
  - 2.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·훈련
  - 3.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
  - 4. 세미나·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·유치·참여

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7조(연구개발)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